보건의료행정과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암대학교 현장(임상)실습 운영 규정과 보건의료행정과 운영 규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행정과의 현장 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지침에 의한 현장실습 대상은 보건의료행정과 학생으로 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실습운영) ① 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전임교원을 책임자로 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 학과장이 전임교원일 경우에는 학과장을 책임자로 한다.

② 현장실습 주요일정은 현장실습 일정계획[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실습생교육) ① 실습 운영 학과의 학과장 또는 실습 지도교수는 실습생 파견 전 전체 실습생을 대상으로 학과에서는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파견하기 전에 현장실습의 목적, 실습기관 현황, 실습평가방법, 실습생 제출서류, 현장실습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임상)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학과에서 주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현장(임상)실습 사전교육은 안전교육, 직무교육, 예절교육, 교양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다.

④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⑥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⑦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1. 현장실습 수업계획

2. 수강신청 계획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4.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5.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6.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습기관선정 및 배정) ① 실습 기관의 학생 배정은 기관의 규모, 학생들의 적성, 진로희망,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각 학생의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고 배정한다.

② 실습 1회당 기관의 규모별 학생 배정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상급병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 종합병원은 1~5명으로 한다.
3. 병원은 1~5명으로 한다.
4. 의원은 1~3명으로 한다.

제6조(순회지도)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학과에 속한 모든 전임교원에 순회지도 실습업체를 배정하며 전임교원은 실습기간에 배정된 실습업체를 1회 이상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수학점 및 실습시기

제7조(이수학점) 현장실습은 전공필수과목으로 2학점으로 한다.

제8조(실습시기) 현장실습은 졸업 전 학년도(2학년)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복학 등으로 인하여 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학기 중 및 하계 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실습기간)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4주(160시간)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실습평가) ① 현장실습 담당자는 [별표 21]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에 따라 실습일지와 산업체 평가서를 근거로 [별표 3의 개인별 현장실습 종합평가서를 이용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습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개선을 위하여 담당부서와 학과는 실습 종료 후 산업체, 실습생 대상 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회 등을 실시하고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평가는 대상자별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해당학과는 평가실시 후 7일 이내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④ 주관 부서는 평가 결과에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차년도 실습운영 시 반영한다.

⑤ 현장실습일지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책임자가 평가한다.

⑥ 현장실습은 총 실습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⑦ 현장실습의 성적은 [별표 2]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실습대체) ① 제2조에 의한 실습대상 학생이 관련 산업체에 근무할 경우에는 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실습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산업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2. 개인의 사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습이수 기간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제12조(실습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습에서 제외한다.
1. 1일 8시간미만 및 주 2~3일 등 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실습
2. 대학주관이 아닌 학생 개인 섭외 및(공개)인턴(단기근로) 등이 형태
3. 대학 내 수업과 외부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
4. 단기체험(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활동
5. 해당학과 전공이 아닌 현장실습
6.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제4장 현장실습 업체 및 현장지도

제13조(현장(임상)실습업체) ① 현장(임상)실습업체는 시설 및 규모를 참작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임상)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학생이 실습을 시작하기 전 학과와 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로서 해당 학과의 교과목과 연계된 업체
3. 요양기관 전문병원 또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여성전문병원, 아동전문병원, 정신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4.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5. 현장실습교육 기관 또는 해당 부서의 실습 학생 교육 시 필요한 주요지침, 학생의 권리보호, 현장실습 학생 지도 지침 등을 구비한 의료기관
6.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별도 승인서에 의함)
④ 현장실습기관은 학교 및 학생 거주지와의 접근성, 졸업 후 취업가능성, 현장실습 편의시설, 교육담당자의 자격요건, 실습교과목 교육목표와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학 협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현장(임상)실습업체는 시설 및 규모를 참작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임상)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⑥ 현장(임상)실습업체는 실습대상 학생 각자 실습업체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⑦ 학생 각자가 현장(임상)실습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 3(실습 산업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 중 5인 이상이 근무 중인 업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로서 해당 학과의 교과목과 연계된 업체
3.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산업체
4.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체
5.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지도가 가능한 산업체
6.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산업체
7. 기타 주관부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체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별도 승인서에 의함)

제14조(현장(임상)실습계약) ① 현장(임상)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산학협동협약이 체결되어 별도 협약이 필요 없는 업체는 현장(임상)실습 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실습경비) 국내외 현장실습운영규정 제20조의 3의 실습 지원비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실습업체임무) 학생(임상)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임상)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된 시간에 충실한 실험(임상)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실험실습 기구의 사용을 보장한다.
2. 산업체의 장은 현장(임상)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을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3. 산업체의 장은 학생 현장(임상)실습의 총책임자를 임명하고 실습생을 총괄하며 실습근태상황을 파악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산업체의 장은 실습학생이 문제점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실습지도) ① 현장(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에서는 현장(임상)실습 지도교수가 순회 지도하도록 한다.
② 지도교수는 산업체와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에게는 별도의 현장(임상)실습 지도비를 출장비로 지급하고 지도교수 개인이 출장을 신청토록 한다.
④ 지도교수는 실습기관 순회지도 후 10일내에 방문결과보고서(실습지도일지)를 주관 부서에 제출 한다. 순회지도 출장 복명서는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결과보고서(실습지도일지)로 대체한다.

제5장 현장실습생

제18조(실습생 의무) ① 실습기관의 내규를 준수하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실습을 통한 현장적응 능력배양에 주력한다.
② 현장실습은 수업의 연장이므로 학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장은 예의 있고 단정하게 한다.
③ 실습기간동안 실습기관의 구성원에게 예의를 지키며, 실습기관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④ 실습기간동안 실습기관의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행동하며, 자기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협동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⑤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생 신분을 망각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실습 중 알게 된 모든 보건의료정보는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화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
⑦ 실습 시행 5일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실습생 권리) ① 현장실습은 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지침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20조(실습기간 이수 및 무효) ① 실습생은 대학과 실습 산업체 간의 실습 일정, 기간,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습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실습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장 실습은 무효가 되며,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산업체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2. 실습기간의 1/4이상 무단결근하였을 경우
3. 실습장을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
4. 산업체 지정을 받은 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실습을 거부하는 경우

제21조(실습 산업체 변경) 실습생은 실습 개시 5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실습 담당 교수의 승인 후, 실습 산업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실습개시 5일이 경과 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시는 이를 불허한다.

제21조(실습일지작성) 현장실습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실습기관의 현장 지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개강 후 현장실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제22조(실습생 제출서류) ① 실습을 완료한 학생은 1주일이내에 해당학과에 실습일지, 산업체 평가서 등의 결과물을 실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에서 대학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현장실습 일정계획

주요 일정	시 기
• 현장실습기관 선정 교육과정위원회 회의 결정	• 현장실습 실시 10주 전까지
• 현장실습기관 섭외, 의뢰 및 협약 체결	• 현장실습 실시 4~8주 전까지
• 현장실습 협의 및 수립	• 현장실습 실시 4주 전까지
• 현장실습 특강 및 사전준비교육	• 현장실습 실시 2~3주 전까지
• 현장실습 학생 배정	• 현장실습 실시 4주 전까지
• 현장실습 기간	• 방학 중
• 현장실습 방문지도	• 현장실습 기간 중
• 현장실습 평가보고회	• 현장실습 종료 후(2~3주) 학기 내

[별표 2] 현장실습 평가 기준

기 준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 세부사항	배점
현장실습 종합평가서 (100)	현 장 산업체 (40)	지식(Knowledge)	전공전문지식	5
			실습관련지식	5
		기술(Skill)	실습이해능력	5
			실습능력	5
			문제해결능력	5
		태 도(Attitude)	원만한 대인관계	5
			실습시간 준수	5
			열의	5
	출석점수 (20)	출석	출석점수	20
	실습일지 (20)	실습일지평가	실습내용란에 기재방법의 체계성	4
			교과 관련내용과 실습과정의 접근성	4
			실습중 문제점·개선점 기재 내용의 합리성	4
			실습 소감 기재내용의 타당성	4
			현장지도 책임자의 실습지도 의견의 중요성	4
	현장실습 담당교수 (20)	현장실습 담당교수 평가	순회지도시 현장실습 적응력 평가	10
			현장실습 완료 후 성취도 평가	10

[별표 3] 개인별 현장실습 종합평가서

개인별 현장실습 종합평가서

1. 학 과 : 과

2. 학 번 : 성 명 :

3. 현장실습 산업체명 :

4. 현장실습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5. 평 가

가. 현장실습 현장 평가 (40점 : 각항 5점 만점)

지 식 (Knowledge)		기 술 (Skill)			태 도 (Attitude)		
전공전문 지식	실습관련 지식	실습이해 능력	실습능력	문제해결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실습시간 준수	열의

나. 출석점수 (20점) ---------- (점)

다. 실습일지 평가 (20점 : 각항 4점 만점) (점)

1) 실습내용란에 기재방법의 체계성 ---------- ( )

2) 교과 관련내용과 실습과정의 접근성 ---------- ( )

3) 실습중 문제점·개선점 기재 내용의 합리성 ---------- ( )

4) 실습 소감 기재내용의 타당성 ---------- ( )

5) 현장지도 책임자의 실습지도 의견의 중요성 ---------- ( )

라. 현장실습 담당교수 평가 (20점 : 각항 10점 만점) (점)

1) 순회지도시 현장실습 적응력 평가 ---------- ( )

2) 현장실습 완료 후 성취도 평가 ---------- ( )

마. 총점(100점 만점)

현장산업체	출석점수	실습일지	현장실습담당교수	총점 계
				점

현장실습 지도교수 인

청암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4]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1. 신청자 인적사항

학 과	학 번	성 명	서명	현 주 소	연 락 처

* 신청자가 추가될 경우는 명단을 상기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산업체

산업체명	소재지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산업체 실습담당자	
					직위	성명

3. 실습일정 및 실습교과목

실 습 일 정			실습교과목	
실습기간	실습일수	실습시간	신청학점	교과목명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일간	총 시간	학점	

* 첨부 : 1. 산업체 현장실습 서약서 1부. 2. 산업체 현장실습 약정서 1부.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암대학교총장 귀하

☞ 절차 : 학생(산업체)이 작성하여 학과에서 수합 후 교무처에 제출

[별표 5] **산업체 현장실습 서약서**

산업체 현장실습 서약서

학 과 명 :　　과　　학년　반
학　　번 :
성　　명 :
산업체명 :

위 본인은 현장실습 기간 중 학칙과 회사의 사규를 엄수할 것은 물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실습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않고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실습에 임한다.

2. 학교에서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일은 일체 엄금한다.

3. 만일 위의 사항을 위반 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실습기간 중 발생한 과오나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진다.

4. 실습 완료 시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일지를 3일 이내에 현장실습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단, 산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발송된 경우는 제외한다.

20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청암대학교총장 귀하

☞ 절차 : 학생이 작성하여 학과에서 수합 후 교무처에 제출

[별표 6]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1. 실습생 명단

학 과	학 번	성 명	비고

* 해당학생이 추가될 경우는 명단을 상기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기간

실습기간	실습일수	실습시간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총 일	총 시간 (주)

3.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

담당부서	직 위	담 당 자	연락처

위 학생의 현장(임상)실습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산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직인)

청암대학교총장 귀하

☞ 절차 : 산업체에서 작성하여 학과에서 수합 후 교무처에 제출

[별표 7] 산업체 현장실습 도착확인서

산업체 현장실습 도착확인서

1. 실습생 인적사항

학 과 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2. 실습산업체

산업체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산업체 실습담당자	
				직위	성명

3. 실습기간

실습업체 도착시간	실습(예정)기간	실습일수
20 년 월 일 시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위 학생이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업체에 도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학생성명 (인)

실습업체대표 (직인)

청암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8] 산업체 현장실습 도착확인서

현장실습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실습 교과목

대 학		학 과	
학 번		성 명	
교과목명		학 점	

2. 현장실습 산업체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현장실습 산업체	실습기간	현장실습 산업체	실습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 )주		200 . . .부터 200 . . .까지 ( )주	

( ) 사유로 현장실습 산업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학과장 : (인)

교무처장 귀하

첨부 :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변경 후), 실습기관 소개서 각 1부.

위와 같이 현장실습 산업체 변경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팀장	교무처장

[별표 9] **현장실습 협약서**